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 18 선고 2022가단709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박정혁, 유병일, 전수려

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담당변호사 이명진, 윤기찬

변론 종결2022. 11. 9.

판결 선고2023. 1. 18.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B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1. 3.
18. 접수 제214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2020. 10. 5. B와 사이에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9,000,000원, 보증기간 2020. 10. 5.부터 2021. 10. 2.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 2) B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21. 8. 30.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금 19,000,000원, 이자 378,209원(2021. 3. 5.부터 2021. 8. 29.까지), 비용 291,930원 합계 19,670,13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3) 원고는 B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1. 11. 3. 'B은 원고에게 18,970,372원 및 그 중 18,970,21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법원 2021차전11445)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1. 11. 23. 확정되었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 1) 2021. 3. 4.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B의 국세채납으로 인한 시흥세무서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 2) B은 2021. 3.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6,000,000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B의 채무초과

-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716,000,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81,356,15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고, 현재까지도 채무초과상태이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129,930	갑 제9호증의 1
2	시흥세무서	16,188,220	갑 제9호증의 2
3	중소기업은행 C 유한회사	795,000,000	갑 제9호증의 5
4	D 카드	17,944,000	갑 제10호증, 이 법원의 E기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5	F	28,761,000	
6	G	300,000	
7	H	67,890,000	
8	I	55,143,000	
합계	981,356,1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E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B이 2020년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부터 연체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대위변제한 이자액에 비추어 2021. 3.경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도 연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와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B에 대하여 2021. 7. 16.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고, 현재까지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이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J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 변제를 위해 B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사해의사 또는 수익자의 이에 대한 악의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가 2021. 4. 15.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5. 6.경 피고로부터 아파트형 공장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15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이 법원 2019고단3900)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J가 2021. 3. 18. 피고에게 위 피해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이행 약정서를 작성해주었고, 이에 대하여 B이 연대보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순위로 근저당권을 마쳐주기로 한 사실, 이후 피고와의 합의서가 위 형사재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에 시흥세무서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음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B의 재산상태를 충분히 의심하고 다른 일반채권자의 존재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경위 및 동기, 그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중론

별지